

‘특약’ 안 들면 사고보상 못 받아... 여행보험 가입 주의!

금감원, 분쟁 많은 여름철 보험 ‘꿀팁’ 안내

일반 상해보험은 동호회 레저활동 사고 보장 안 해 수영장서 아이 넘어져 다쳐도 업체 배상 책임 없어

A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다쳐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B는 동남아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파손해 렌탈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했다. 이후 미리 가입해 둔 여행자보험에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C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다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A와 B, C는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동호회 목적 고위험 레저활동’이라는 이유로, B는 대여 장비는 약관상 면책 대상이라는 이유로, C는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여행이 증가하면서 보험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김동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장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맞춰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니면 보험 보장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약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스쿠버다이빙·패러글라이딩·수상보트 등의 레저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가입 시 ‘레저특약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상해보험은 동호회 목적의

휴가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자료: 금융감독원

스쿠버다이빙 등 고위험 레저활동 보장 예시		
보험유형	보장여부	보장범위 특징
일반상해보험	x 보장제외	일상생활 중 사고중심보장
여행자보험 (레저특약 불포함)	x 보장제외	여행 중 일반사고 중심
여행자보험 (레저특약 포함)	o 보장가능	여행 중 고위험 레저활동 포함
레저전용 상해보험	o 보장가능	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

해외여행중 배상책임보험* 보장 예시		
신체피해	장비피해	비고
자신 피해	x 보장제외	x 보장제외
타인 피해	o 보장가능	o 보장가능

* 여행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보상
예: 부딪쳐서 타인이 타고있는 장비를 파손시킨 경우 등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위험 레저활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A의 사례처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손해는 보장하

지 않기 때문에 B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렌탈업체가 별도로 장비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상

태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C는 아이가 수영장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지만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상책임을 받지 못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체육시설이나 음식점 등은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특약이 포함돼 있다면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C의 자녀가 피보험자인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고장에 대비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보장 특약’도 보장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D는 에어컨 냉매 고장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제품이 제조된 지 10년을 초과해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관에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는 조항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E는 냉장고 부품이 단종돼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제조사로부터 보상판대로 교환을 진행했다. 이후 교환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실제 수리가 이뤄지고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은 ‘수리비’ 보장을 전제로 하며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의 후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후대전화 분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후대전화를 단순히 분실한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 없다. 후대전화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도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중에 후대전화가 파손된 경우는 어떻게. 이 경우 여행자보험의 후대품 손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후대전화 보험도 함께 가입돼 있다면 실제 지급한 수리비가 비례 초과한 제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외환 거래 일평균 821억 달러... 역대 최고치

1분기보다 94억 달러 증가 환율 변동성 상승 영향

국내 소재 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2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821억6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직전 분기(717억6999만 달러)보다 12.9% 증가한 수치로, 2008년 통계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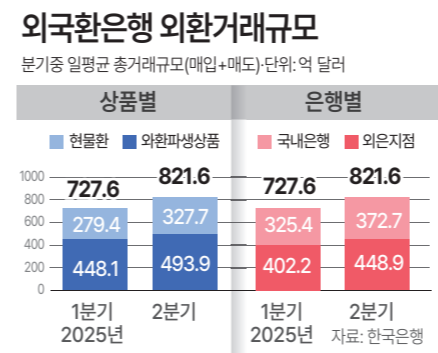
된 이후 최대 규모다.

실제 통화를 이용한 외환거래는 물론 외환을 이용한 투자 상품 거래도 고루 증가했다. 우선 실물 통화를 거래하는 현물환의 경우 전 분기(279억5000만 달러) 대비 17.3%가 늘어난 32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환율로 인한 차이로 수익을 얻는 외환파생상품은 493억9000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10.2% 증가했다.

한은은 거래량 증가의 요인을 환율 변동

성으로 들었다. 높은 수익을 노리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설명이다. 1분기 0.36%이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2분기 0.61%로 상승했다.

외환 시장의 기대를 얻은 점도 한몫했다. 한은은 투자자들이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신정부 정책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원화 가치가 2분기 들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증권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량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증권을 매수 및 매도한 금액은 4~5월 238조 원으로 1분기보다 15조 원 늘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자동차보험 개정, 졸속 추진 말라”

정비업계 등 전면 재검토 촉구 “실제로는 피해자에 비용 전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일부 내용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김상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비자단체, 정비업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 의원을 비롯 홍문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 김성호 차량기술사회 회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제도 개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정점이 된 개정안 내용은 보험 수리 시 인정되는 부품 기준을 기존 OEM(순정) 부품에서 품질인증(대체) 부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순정 부품을 사용하려면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품질인증 부품의 인증기관을 특정 민간 단체 하나에 독점하게 한 것도 문제”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 부품을 선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한다면 추가금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인증 권한이 특정 민간단체(KAPA)에 집중된 점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KAPA가 해외처럼 다기관 인증 구조가 아닌 단일 민간기관 중심이라며 인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과 참석자들은 제도의 졸속 시행을 막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공공제도”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금융위 “채무자 보호 잊지 말아야”

연체 관리 개선 현장 간담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29일 오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금융권 관계자, 법

률 전문가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했으며 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4월 중정권 타운홀 미팅을 한 뒤 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라고 한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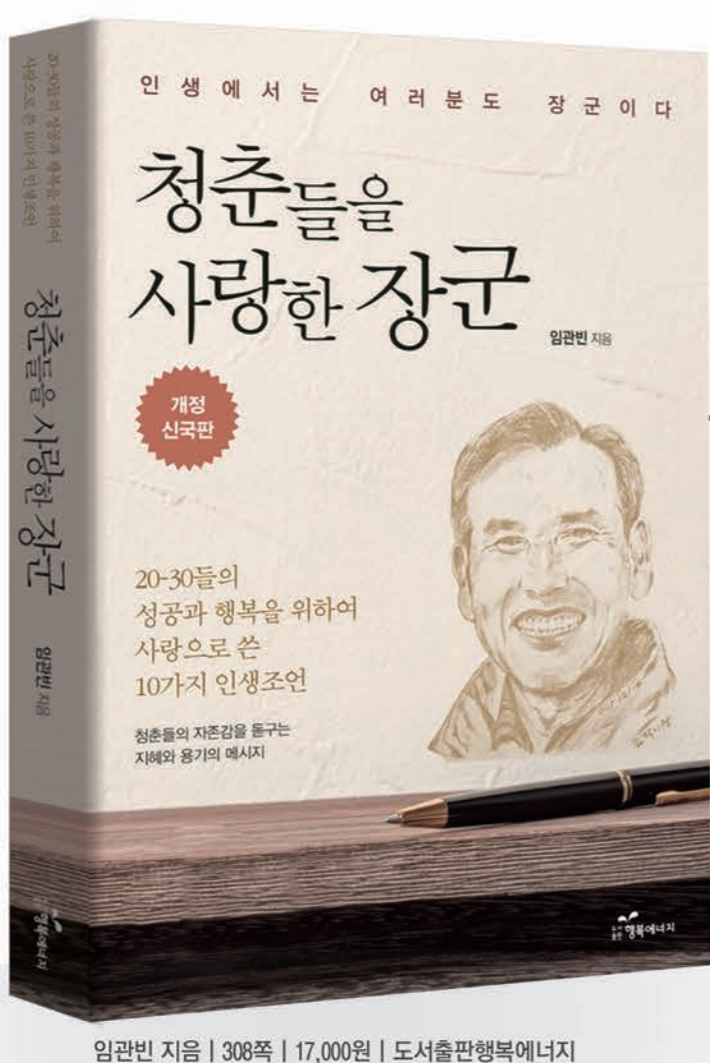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업·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한 상황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압박을 하면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기 연체자 증가, 소멸시효 제도의 실효성 약화,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균형한 권력 구조 등을 언급하며 “채권자 우위의

제도가 오히려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 시 채무자 보호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공공 중심의 채무조정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금융회사도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체 단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등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 정비 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